

『재산영농조합법인』 농가부채대책자금 채무보증 동의안

의안 번호	88
----------	----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평창군보증채무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 융자금 대출액 20억원에 대한 평창군의 채무보증액중 '99.6.30현재 상환도래된 '99년도 상환대상 원리금의 일부를,
-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는 정부의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에 의거 농가부채대책자금을 지원받아 상환기간을 2년간 상환기간 연기코자 함에 있어,
- 본 농가부채대책자금은 연리5%의 금리로 담보 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에 의한 신규대출 형식으로 지원되나 담보물건의 부족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에 의한 보증이 불가함에 따라 당해 자금에 대하여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신청이 있어,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안함.

2. 주요골자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 융자금 20억원을 '92.6.29일 평창군의회 의 동의를 얻어 '92.7.14일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으로 '92.8.31일 융자실행 하였음.
- 정부에서는 '98.11월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으로 농림업 중장기정책자금중 IMF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체를 대상으로,
 - '98.10.1~'99.12.31일 기간중 상환도래되는 원리금을 2년간 상환연기하여 농업경영체의 부채상환 능력제고로 농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 연기되는 원리금은 연리5%의 금리로 신규대출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는 '99.6.30일 기준 상환도래액 229,565천원중 99.6.27일 상환한 100,000천원을 제외한 129,565천원에 대하여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 자금을 지원받아 상환기간을 2년간 연기코자 함에 있어,
 - 본 농가부채대책자금은 연리5%의 금리로 담보 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에 의한 신규대출 형식으로 지원되나,
 - 법인소유의 담보물건이 없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에 의한 보증서 발급이 불가함에 따라 본 자금대출에 대한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을 요청하였음.

3.채무보증이 필요로한 이유

가.채무보증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에 의해 지원되는 자금은 기존의 상환도래 원리금을 대환(돌려메우기)하는 절차에 의한 지원방식이므로 본 자금에 대하여 추가 채무보증을 하여도 기존의 채무보증 사항과 변동이 없음

1).채무보증액.

- 금차 대출금리와 당초 채무보증 금리가 동일함 ⇒ 5%
- 금차 대출액은 대환(돌려메우기)형식이므로 기존의 상환도래액을 대환조치하므로 보증액의 변동이 없음.

2).보증기간

- 당초 채무보증한 기간내에서 '99상환도래액중 금회 채무보증신청한 129,565천원에 대하여만 2년간 상환연기되므로 전체적인 상환기간의 변동이 없음.

나.채무보증 불가시 예상되는 문제점

- ①'99.6.30일 현재 상환도래액의 상환불가시 과중한 연체이자 부담 및 기타 금융자금 지원불가

○7~9월(유예기간)

- 상환도래액 129,565천원에 대하여 연17% 연체이자 부담(1일 60,350원)

○10월 이후

- 상환잔액 전액 1,591,685천원에 대하여 연17% 연체이자 부담 (1일 741,330원)

- 유예기간(9월까지)중 미상환시 불량거래자로 등록되어 기타 운전자금 대출불가
- ②미수용시 연체이자 과중 및 운전자금 부족으로 법인의 경영난 악화
- ③최악의 경우 법인의 운영포기 및 도산시 기존 채무보증액에 대한 변제가 불가피하여 군의 재정상 손실을 가져오므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
- ④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5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된 시범사업으로서 경영의 정상화 및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채무보증이 불가피함.

4.관계법규 및 지침

가.지방자치법 제115조 제5항

나.지방재정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다.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및 제5조

붙임 : 1. 채무보증서(안) 1부.

2. 채무보증신청서 사본 1부.

채 무 보 증 서(안)

제 호

봉평농협장 귀하.

평 창 군 수 (인)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 1.주채무자 : 평창군 용평면 재산영농조합법인 대표 김 성조
- 2.채무건명 :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 지원자금 대출 채무보증
(「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 용자금중 '99.6.30일 현재 상환
도래액의 일부)
- 3.채 무 액 : 일억이천구백오십육만오천원정 (₩129,565,000)
- 4.이 자 율 : 년5%
- 5.상환기간 : 1999년 9월 ~ 2001년 9월 (2년간)
- 6.상환재원 : 유리온실 시설재배 및 법인운영 수익금
- 7.담 보 : 성장작목시범단지 시설물(유리온실 4동/6,000평, 저온저장고
1동/200평) 및 농가부동산 - 기담보설정분
- 8.용자재원 : 재정농업중기자금대출금
- 9.관계기관 : 봉평농업협동조합(장평지소)
- 10.채무보증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10조, 지방재정법시행
령 제21조, 평창군보증채무조례
- 11.기 타
- 12.준수사항
 - 가.채권자는 평창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평창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
 - 나.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창군
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다.평창군수는 평창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채권자 기타 평창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 재산, 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채권자는 평창군이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마.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을시는 「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 융자금 대출시 '92.7.14일 군수의 채무보증 발급에 의한 대출실행후 저당권설정한 물건에 의하며, 채권자는 이에 필요한 근저당권 추가설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바.집행기관과 채권자는 특별한 관심과 지도감독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채무보증신청서

제 호

평창군수 귀하

재산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성초



다음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별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군수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 지원자금 대출 채무보증
(「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 용자금 대환)

2. 내 용

가. 채권자 : 봉평농협장(장평지소장)

나. 채무액 : 일억이천구백오십육만오천원정 (₩ 129,565,000)

다. 이자율 : 년5%

라. 상환기간 : 1999년 9월 ~ 2001년 9월 (2년간)

마. 상환계획 : 일시납(이자 1년후취)

3. 사 유

가. 주채무발생 : '99.6.30일 현재 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 용자금 상환도래
원리금

나. 군 보증이 필요한 사유 : 정부의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에 의거 농
가부채대책자금을 지원받아 '99.6.30일 현재 상
환도래된 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 용자금을
2년간 상환연기(대환)코자 하나 농림사업자신용
보증서발급 불가 및 담보물 부족

다. 채무보증 신청의 근거 : 지방재정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1조 2항, 지방
자치법 제115조, 평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라. 기타 참고사항

4. 준수사항

가. 주채무자는 평창군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평창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창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군수는 평창군이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채권자 기타 평창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운영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군수는 전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주채무자는 타채무에 우선하여 평창군이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재산영농조합법인」 농가부채대책자금 채무보증 동의안 제안설명서

I. 채무보증 경과 및 현황

1. 평창군의회 채무보증승인 _____ '92. 6. 29.
2. 채무보증서 발급 _____ '92. 7. 14.
3. 용 자 실 행 _____ '92. 8. 31
4. 채무보증 사유

- ① UR대책 농업구조개선 정책사업으로서 사업추진이 불가피
- ② 농가당 용자금의 과다로 담보능력 부족(농가당 133백만원)

5. 채무보증 내역

(단위:천원)

구 분	보 증 액	상환(보증)기간	지 원 조 건
계	2,000,000		
유리온실	1,800,000	1992. 6~2012. 6	연리5%, 3년거치 17년 균분상환
저온저장고	200,000	1992. 6~2002. 6	연리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6. 그동안의 상환내역

(단위:천원)

거치기간 (93~95)	계 ('99.6.30현재)			'96 년 도			'97 년 도		
	계	원	금 이 자	계	원	금 이 자	계	원	금 이 자
249,580	802,243	408,314	393,929	234,800	134,520	100,280	231,011	134,480	96,531

'98 년 도			'99 년 도			상환잔액	비 고
계	원	금 이 자	계	원	금 이 자		
236,432	134,440	101,992	100,000 (229,565)	4,875 (134,440)	95,125 (95,125)	1,591,685	

()속은 99년도 상환대상 금액

7.채무구조 및 운영사항

(단위:천원)

결산년월	총 자산	자기자본	자 본 금	매 출 액	당기순수익
'96.12.31	2,909,699	117,628	159,642	991,309	40,457
'97.12.31	3,105,383	679,682	858,942	1,020,438	△114,456
'98.12.31	3,170,486	824,880	993,902	934,599	10,238

Ⅱ.채무보증신청 사유

-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5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으로서 경영의 정상화로 지속적인 운영이 되어야 하는 시범사업으로써.
- '97년도는 IMF 구제금융에 따른 유가상승, 소비둔화, 원가상승등으로 경영난을 겪었으나 강력한 구조조정 및 경영안정으로 '98년도에는 흑자경영을 하였고 '98년도까지는 채무보증액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였으나 '99년도에는 운전자금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음에 따라,
- '99년도 상환도래액 229,565천원중 100,000천원을 상환하고 잔액 129,565천원을 정부의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 자금을 지원받아 2년간 상환연기코자 함에 있어,
 - 본 농가부채대책자금은 연리5%의 금리로 담보 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에 의한 신규대출 형식으로 지원되나,
 - 법인소유의 담보물건이 없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에 의한 보증서 발급이 불가함에 따라 본 자금대출에 대한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을 요청하였음

Ⅲ.채무보증이 필요로한 이유

가.채무보증 불가시 예상되는 문제점

- ①'99.6.30일 현재 상환도래액의 상환불가시 과중한 연체이자 부담 및 기타 금융자금 지원불가
- 7~9월(유예기간)
 - 상환도래액 129,565천원에 대하여 연17% 연체이자 부담(1일 60,350원)

○10월 이후

-상환잔액 전액 1,591,686천원에 대하여 연17% 연체이자 부담
(1일 741,330원)

○유예기간(9월까지)중 미상환시 불량거래자로 등록되어 기타 운전자금
대출불가

②미수용시 연체이자 과중 및 운전자금 부족으로 법인의 경영난 악화

③최악의 경우 법인의 운영포기 및 도산시 기존 채무보증액에 대한 변제가
불가피하여 군의 재정상 손실을 가져오므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의 필요성이 대두됨

④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5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된 시범사업으로
서 경영의 정상화 및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채무보증에 불가피함.

가.채무보증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에 의해 지원되는 자금은 기존의 상환도래
원리금을 대환(돌려메우기)하는 절차에 의한 지원방식이므로 본 자금에
대하여 추가 채무보증을 하여도 기존의 채무보증 사항과 변동이 없음

1).채무보증액.

- 금차 대출금리와 당초 채무보증 금리가 동일함 ⇒ 5%

- 금차 대출액은 대환(돌려메우기)형식이므로 기존의 상환도래액을
대환조치하므로 보증액의 변동이 없음.

2).보증기간

- 당초 채무보증한 기간내에서 '99상환도래액중 금회 채무보증신청한
129,565천원에 대하여만 2년간 상환연기되므로 전체적인 상환기간의
변동이 없음.